

2015. 5. 21. (木) 11:00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의실

---

---

# 가칭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T/F 회의

---

---

가칭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

---

# 가칭)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운영규정 제정(안)

---

---

## □ 회의개요

- 일시 : 2015. 5. 21.(수) 11:00
- 장소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의실
- 참석대상 : 3개 단체(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가칭)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준비를 위한 TF팀 4단체 중 3단체 참여
- 회의내용 : 가칭)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운영규정 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규정제정 관련

- 1안) 회칙 : 공동의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인 모임의 규칙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회칙사용
- 2안) 운영규정 : 모임의 운영을 위해 성격, 내용, 의미 등을 밝히고 규칙으로 정한 조항  
※기존 경기도사회복지정책연대회의 운영규정 사용

## □ 기타 논의사항

- 가칭)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명칭 선정
- 참여단체 확정
  - 참가동의서를 통한 참여단체 명문화
  -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2개소 추가  
※ 총21개소 예정(기존19개 단체 +추가 2개소)
- 사업계획 및 방향 논의
  - 가칭)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발족식 퍼포먼스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민·관협력 참여방안
  - 민간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방안
  - 사회복지인 전진대회 개최방안
- 기타
  -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선정관련
  - 향후 추진일정

## 【1안】

# 회 칙(안)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라 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제시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및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 관내 사회복지단체의 연대활동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위탁제도 등 사회복지정책 제안을 위한 사업
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
3.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
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는 경기도 관내 사회복지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관내 사회복지직능단체
2. 경기도 관내 사회복지관련단체

제6조(회원의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회칙과 각급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4. 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와 회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징계할 수 있다.
- ③ 회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1인
2. 공동대표 2인
3.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본 회의 임원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대표는 본 회의 공동대표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대표가 경기도 관내 사회복지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본 회 상임대표직을 상실하며 이 경우 총회에서 상임대표를 선출한다.
3. 공동대표는 경기도 관내 사회복지단체의 장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공동대표가 경기도 관내 사회복지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본 회 공동대표의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의 차기회장이 공동대표를 자동 승계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대표와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회칙에 따라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공동대표는 상임대표를 보좌하고 상임대표 유고시 공동대표의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본 회의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4장 회의

제13조(회의의 구분) 회의는 총회 및 대표위원 회의와 실무위원 회의로 구분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가입승인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상임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7.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사업 당해연도의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17조(대표위원 회의구성) 대표위원 회의는 회원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실무위원 회의구성) 대표위원 회의를 보좌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회원 대표자의 추천으로 실무회의 위원을 구성하며, 대표

위원 회의와의 연계운동을 위해 대표위원 중 대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대표위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9조(서면결의)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

제20조(대표위원회의의 의결사항)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및 수정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회원의 가입승인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1조(회의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통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사무국) ① 본 회의 총회에서 위임된 사무와 본 회의 사무전반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며, 사무국장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 제5장 재정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재정조달)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연회비, 분담금,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5조(예산과 결산) 사무국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당해 연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에 대한 감사를 거친 후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 제6장 보칙

제26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본 회의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27조(위임) 본 회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업무 집행 시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안】

#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의 운영 규정(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 ①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제안
- ②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③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 ④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
- ⑤ 기타 본 연대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연대회의는 경기도내 사회복지 관련단체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① 연대회의는 상임대표 1인과 공동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
- ②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상임대표가 경기도 관내 사회복지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 회의 상임대표직을 상실하며 연대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 ④ 공동대표가 경기도 관내 사회복지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단체의 차기회장이 공동대표를 자동 승계한다.
- ⑤ 연대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대표가 속한 단체를 간사단체로 한다.
- ⑥ 연대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연대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당해 연대회의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대표는 상임대표를 보좌하고 상임대표 유고시 공동대표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장 회 의

**제5조(회의구분)** 회의는 대표위원 회의, 실무위원 회의로 구분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연대회의는 당해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격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책 연대회의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으로 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각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임대표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원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의결사항)** 연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한다.

1.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정책개발 및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대회의 사업계획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연대회의 가입승인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상임대표가 부의한 사항

**제8조(위임장)** ① 연대회의는 위임장을 통해 출석과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임장의 효력발효는 해당 회원이 별첨 1 서식에 의해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의개 최 12시간 전까지 상임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회의)** ① 연대회의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대회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대표위원 중 대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연대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0조(서면결의)** 의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

### 제3장 회 계

제11조(사업예산) 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소속회원단체의 회비와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4장 보 칙

제13조(위임) 이 운영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연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업무 집행 시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1】

# 위 임 장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운영규정 제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 회원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사항 : 성원권, 의결권

■ 수 임 자

성 명 :

소 속 :

직 위 :

201 . . .

위임자 : (인)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귀하

# 가칭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참여단체 명단

연번	기관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고
1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경학	031-213-8551	
2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이은경	031-222-6097	
3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회장	배승룡	031-840-5303	
4	경기도재가노인복지관협회	회장	박영순	031-366-1386	
5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회장	김정호	031-454-2077	
6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회장	홍갑표	032-683-4486	
7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최신원	031-220-7915	
8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조승철	031-252-7554	
9	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회장	방원국	031-751-1970	
10	경기도아동복지협회	회장	한경희	031-252-3060	
11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최창한	031-243-1486	
12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김기호	031-244-7015	
13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정 권	031-256-6073	
14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김민수	031-292-0795	
15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김기홍	031-244-1030	
16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박정선	031-232-3036	
17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회장	김진곤	031-318-7100	
18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양만호 유덕화	031-215-4399	
19	경기사회복지귀시설협회	회장	김장배	032-323-3206	

※추가 2개소 예정(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추천)